제590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

2025. 9. 26.

국 무 조 정 실
규 제 조 정 실

Ⅰ. 회의개요

○ 일　　시 : ‘25. 9. 26. (금) 14:00 ~ 16:00

○ 출석위원(10명)

- 민간 위원장 (주재)

- 민간위원 : 강영철, 고동수, 박선규, 박익수, 오균, 이민창, 이인호, 조원동 위원

- 정부위원 : 국조실, 법제처

Ⅱ. 상정안건

구분	의안번호	상정기관	의 안 명	구분
①	2025-387	국조실	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심사(안)	심의
②	2025-388	행정연	2025년 상반기 사후규제영향분석 결과	보고

Ⅲ. 회의 결과

1. (심의) 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심사(안)(국조실, 2025-387호)

□ **보고내용** (요약)

○ 신설·강화 규제에 존속기한 또는 **재검토기한(5년 이내)**을 **설정**하여 **규제의 타당성 제고** 및 **국민·기업의 규제부담 완화**('15년~)

○ **2025년 재검토기한**이 **도래**한 **27**개 부처 소관 **총 1,489건**의 **규제**(비규제* 44건 제외)에 대해, **심층 검토** 추진

* 과징금·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기본법 적용 제외('18.3월) 등

- **총 1,489건 중 378건***(개선 367, 폐지 11) **정비 추진**(**정비율 25.4%**)

* (**주요 사례**) ▲100만원 미만의 **폐기물부담금**도 **분할납부 가능**토록 완화, ▲**입주자 모집공고**를 종이 신문 외에 **전자적 매체**도 가능토록 개선, ▲**오토바이 운전면허 시험 학과 교육 시간**(5시간→3시간) 축소 등

□ **논의사항**

○ **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심사**를 통해 **정비**하는 **규제**와 **유사한 규제**를 **법제처***와 협력을 통해 **확인**하여 **발굴·정비**할 필요

* 인공지능(AI)을 활용한 법령 검색 기능 개발을 통해 정비규제와 유사한 규제를 발굴할 수 있는 방안 등 마련 노력 필요

□ **심의결과 : 원안대로 의결**

2. (보고) 2025년 상반기 사후규제영향분석 결과(행정연, 2025-388호)

□ **보고내용** (요약)

○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의2(이하, "**강사법***")에 관한 **분석 결과**

* 강사 **임용시 서면계약**과 **1년 이상 임용**, **3년**의 **재임용 절차 보장**, **방학 중 임금 지급**, 「**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**」을 **적용**할 것 등을 규정

○ **주요 내용**

- (**현황**) **강사 채용인원**은 강사법 도입 직전인 **'18년 대비 '19년 급감**('18년 75,329명→'19년 58,028명)한 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, 반면 초빙·겸임 등 **비전임 교원**의 **수**와 **강의학점 비율**은 **증가 추세***로 파악

* 겸임·초빙교원 강의학점 비율 : 12.3%('18년) → 15.6%('19년) → 16.0%('24년)

· **대학**은 **강사 공개채용 절차**인 **공고**와 **심사·인사위원회** 과정을 **의무**적으로 거쳐야 함에 따라 **부담**이 **발생**하며 결과적으로, **재정·행정적 부담 회피**를 위한 **비전임 교원 확대 현상 발생**

- (**제도 효과**) 분석 결과, 강사법 **제정 목적**인 **강사의 고용안정성 제고**와 **처우개선 효과**는 **부재하거나 제한적**인 것으로 드러남

- (**정책 제언**) ❶강사 공개채용을 포함한 **규제운영 전반의 절차 간소화·표준화**를 통한 **행정부담 완화 방안**, ❷**규제 목적 달성**을 위한 **추가 방안**(예 : 강사 처우 개선비 재개 등) 등 **검토** 필요

□ **논의사항**

○ 박사 과정생 등 **잠재적 강사**에 대한 **의견수렴** 등 **추가 연구 필요**

○ 추후 **사후규제영향분석**은 부처가 **규제 신설·강화시 제시한 효과·목표 달성 수준**을 **객관적**으로 **검증**하는 **방식**으로 **진행 필요**

□ **심의결과 : 원안대로 접수**